

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
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07. 05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

가. 허가 번호 : 제2016 - 05호

나. 허가연월일 : 2016. 07. 04.

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경작

3. 점용·사용의 장소 : 인천 서구 연희동 555-20, 공촌동 293-9

4. 점용·사용의 면적 및 기간

가. 면 적 : 1,926㎡, 1,641㎡

나. 기 간 : 2016. 06. 01. ~ 2017. 05. 31. (1년)

5. 점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

가. 성 명 : 김**

나. 주 소 : 인천 서구 공촌동 ***